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82
----------	-------

발의연월일 : 2019. 6. 14.

발의자 : 이현승 · 전희경 · 추경호

이진복 · 김도읍 · 윤종필

김한표 · 윤영석 · 곽대훈

정갑윤 · 황주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간을 임의적으로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32조).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 다. 골재채취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서류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를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골재채취 신고”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로,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를 “제22조제6항, 제29조”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u>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8. ~ 11. (생 략)</p> <p><u><신 설></u></p>	<p>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p> <p>-----</p> <p>-----</p> <p>-----</p> <p>-----</p> <p>-----</p> <p>-----.</p> <p>-----제1호, 제3호-----</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서류등의</u>-----</p> <p>-----</p> <p>-----</p> <p>-----</p> <p>8. ~ 11. (현행과 같음)</p> <p><u>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지</u></p>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콜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제22조제6항, 제29조

콜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④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
-----.

<p>1. ~ 3. (생 략) <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 한다.</p> <p>1. (생 략)</p> <p>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u>제1 항 제1호 및 제2호</u>에 따른 과태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u>----- -----</p>
--	---